

# 공정위,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화) 유통산업의 변화된 거래관행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백화점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는 특정매입매장을 제외한 순수직영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97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부문의 고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백화점 이외에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소매점의 설치가 확대되는 유통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된 거래관행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개정된 동 고시에 특정매입거래의 개념을 도입하고 반품조건부 거래관행인 특정매입거래를 허용하되 계약서에 거래조건 및 매장위치 등을 명시하여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와 같은 부당변경행위의 금지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관촉사원 파견제도를 정비하여 강요에 의한 관촉사원 파견을 금지하고 입점이나 납품계약서에 합의된 관촉사원의 파견만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거래상대방에게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대규모소매점에 입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거래의 중단을 강요하는 행위 등의 사업활동방해 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였다.

공정위는 동 고시의 개정으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서면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하여 대규모소매점과 협력업체 상호간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도하고, 서면계약서에 거래기간, 대금지급 방법, 관촉사원 파견, 광고비 등의 분담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각종 불공정거래관행의 감소와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안정성을 제고하고, 백화점 매장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정매입매장 입점업체의 보호 강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장형태 및 거래기간 등 거래형태별로 표준약관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고시명칭의 변경

☞ 현행 「백화점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제2조(용어의 정의)에 '대규모소매점업'의 정의 규정

- "대규모소매점업"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백화점, 쇼핑센터 또는 대형점의 개설허가를 받아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을 말하며,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센터의 개설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매를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소매점업”에 포함한다.

**2. 특정매입거래의 개념 도입**

☞ **특정매입거래 용어 정의(제2조제7항)**

-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한 후 재고품에 대하여는 반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형태

**3. 서면계약체결 의무화 및 부당변경행위 금지조항 신설(제11조)**

☞ **모든 납품업자 및 입점업자와의 거래시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을 의무화(제11조제1항)**

- 거래형태, 취급상품, 거래기간, 대금지급방법 및 기간, 판촉사원 파견인원, 비용분담 등 거래조건(특정매입매장 및 임대매장은 매장위치, 면적을 포함) 명시

☞ **계약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의 변경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제11조제2항)**

**4. 판촉사원 파견제도 정비**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용 어	- 판매종업원	- 판촉사원
개 념	-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 판매촉진업무에 종사하는 자
허용범위	- 판촉사원의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적으로 납품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허용	- 납품계약서로 합의된 판촉사원의 파견은 허용
금지행위	- 백화점판매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금지 - 예외조항을 두어 판촉사원 파견 허용 - 백화점업자가 직접 고용한 판매종업원의 인건비 전가 금지	- 판촉사원 파견 강요 금지

**5.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조항 신설(제10조)**

- ☞ **대규모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거래상대방에게 다른 사업자매장에 임점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납품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업계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적 주의를 환기하고자 함**